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5호
----------	------------

제출연월일: 2007. 1. 1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나.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명칭변경, “지역전략사업추진단” 폐지 및 “체육지원단” 신설 등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 제7조)
- 기획담당관 ⇒ 기획감사담당관
 - 정보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 지역전략사업추진단(폐지) ⇒ 체육지원단(신설)
- 나.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 담당분리등에 따른 총무국장의 사무를 정비함 (안 제5조)
- 주민생활지원과(신설)
 - 사회복지과 분리 ⇒ 사회복지·기초생활·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분리 ⇒ 체육지원단(체육지원담당)
 - 환경보호과 청소·자원재활용담당 분리 ⇒ 환경사업소(청소·청소시설담당)
- 다. 지역개발국 도시건축과를 2개과로 분리하고 폐지되는 수도과 업무를 신설되는 수도사업소에 이관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사무를 정비함 (안 제6조)
- 도시건축과 ⇒ 도시과·건축과 분리
 - 수도과 ⇒ 수도사업소(이관)
- 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문화예술회관·행정타운사업소를 폐지 하고, 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신도시조성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함 (안 제14조 및 별표 2)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삭제하고 “체육지원단”을 둔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두며, 같은조 제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6.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호적, 지적, 현장생활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중 “도시건축과”와 “수도과”를 삭제하고, 해양수산과 다음에 “도시과”와 “건축과”를 신설하여 둔다.

제6조제2항중 제1호를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공단조성에 관한사항”으로 하고, 제8호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제7조(여유기구) 제1항중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삭제하고 “체육지원단

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하며, 같은조 제2항 “체육지원단”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중 제2항 “별표2”를 별첨과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관련)

사업소명	위치
수도사업소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하수도사업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환경사업소	사천시 사등동 158번지
신도시조성사업소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28-1번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u>기획담당관·정보담당관 및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u></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회계과를 둔다.</p> <p>②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p> <p>3.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p> <p>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p> <p>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p> <p>6. 주민등록, 호적, 지적, 현장생활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p> <p>7.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8.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p> <p>제6조(지역개발국에 두는 과) ①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해양수산과, <u>도시건축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도로교통과·수도과 및 녹지공원과를 둔다.</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u>기획감사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체육지원단을 둔다.</u></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u>주민생활지원과</u>·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회계과를 둔다.</p> <p>②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지원에 관한 사항</u></p> <p>3. <u>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p> <p>4. <u>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p> <p>5. <u>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2호와 같음)</p> <p>7. (현행 제3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9. (현행 제6호와 같음)</p> <p>10. (현행 제7호와 같음)</p> <p>11.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6조(지역개발국에 두는 과) ①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해양수산과·<u>도시과</u> 건축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u>도로교통과</u> 및 녹지공원과를 둔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p> <p>1. <u>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u></p> <p>2. <u>수산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u></p> <p>4. <u>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u></p> <p>5. <u>지역개발 및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6. <u>재난예방·안전관리 대책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u></p> <p>7. <u>교통행정 및 도로시설의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u></p> <p>9. <u>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u></p> <p>10. <u>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u></p> <p>제7조(여유기구) ①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u>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u>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한다.</p> <p>② <u>지역전략사업추진단</u>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대외업무 벤치마킹 및 지역특화사업 등 전략사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u></p> <p>3. <u>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u></p> <p>제14조제2항 별표2</p>	<p>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p> <p>1. <u>지역경제 및 기업육성·공단조성에 관한 사항</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8. (현행 제9호와 같음)</p> <p>9. (현행 제10호와 같음)</p> <p>제7조(여유기구) ①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u>체육지원단을</u>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한다.</p> <p>② <u>체육지원단</u>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 한다.</p> <p>1. <u>체육진흥에 관한 사항</u></p> <p>2. <u>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14조제2항 별표2(별첨 개정후와 같음)</p>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
 - 실·국 : 2개 이내,
 - 실·과·담당관 : 17개 이내(여유기구 제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행정자치부 2006. 9. 19)

- 본 청 :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 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지침(행정자치부 2001.12.29)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인 것
 - 업무수행의 기관 독립성 : 사업소의 소재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와 같아서는 아니됨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 업무 수행의 현장성 :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추진이 효율적인 경우 설치